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입학전형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 입학홍보부처장, 단과대학 학장, **입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8., 2011.5.16., 2012.4.16., 2012.8.1., 2014.3.1., 2015.3.25., 2019.10.1., 2022.4.1., **2023.9.1.**)
② 삭제 (2011.4.18.)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2.4.16., 2012.8.1., 2014.3.1., 2019.10.1., 2022.4.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1., 2021.01.01.)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각종 고사 및 전형별 세부평가 계획 등)
5. 대학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제5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입학팀** 직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간사로 둔다. (개정 2011.4.18., 2012.8.1., 2022.4.1., **2023.9.1.**)

제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6.3.1.]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조 입학지원처장, 입학지원팀장과 제3조 입학지원처장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 항만로지스틱스학부장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